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규정

제정	1993. 01. 28
개정	1994. 09. 18
개정	1996. 03. 20
개정	2000. 09. 07
개정	2003. 04. 30
개정	2006. 02. 06
개정	2007. 12. 28
개정	2012. 01. 27
개정	2013. 09. 25
개정	2016. 10. 26
개정	2020. 03. 01
개정	2024. 10. 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제2조(구성)

- ① 위원회는 교무부학장, 교육실장, 임상교육위원회 위원장, 임상술기센터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교수회의에서 선출하는 선출직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선출직위원은 적어도 기초치의학 전공교수 2인과 임상치의학 전공교수 2인이 포함 되어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부학장이 되며, 필요시 교육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3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선출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및 권한) 위원회는 치과대학 교수회의에서 위임한 다음 각 호를 연구, 심의 및 결정한다.

- ① 치과대학 역량을 검토하고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역량에 반영하여 필요 시 교육과정을 개선한다.
- ② 역량을 기반으로 한 학생평가체계를 기획, 연구개발하고 이를 운영한다.
- ③ 치의예과 및 치의학과와 교과과정 편성, 교육결과 평가를 포함한 교육과정의 제정, 개편, 조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 심의 및 결정한다.

제5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1993. 01. 28.)(1994. 09. 14.)(1996. 03. 20.) (2000. 09. 07.)(2003. 4. 30)(2006. 2. 6)(2007. 12. 28)(2012. 1. 27)(2013. 9. 25)(2016. 10. 26)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2020. 3. 1)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2024. 10. 23)로부터 시행한다.